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10093 재판절차정지등
채 권 자 이동환 [REDACTED]

[REDACTED]

신청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김민아, 조윤희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윤영환, 신하나)

법무법인 원곡(담당변호사 신고운, 최정규)

채 무 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REDACTED]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23. 12. 8. 출교판결(기감경일재 제2023-30호)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DACTED]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23. 9. 25. 직임정지 처분(기감경제 2023-250호)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산하 연회로서 경기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종교단체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수원권선동지방회 소속 영광제일교회(이사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며,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이하 '채무자 권징재판위원회'라 한다)는 채무자의 교회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나. 채무자 소속 설진기 목사 등은 2023. 3. 6. '채권자가 동성에 찬성 및 동조행위로 정직 2년의 권징결의를 받았음에도, 정직기간이 도과한 이후 계속하여 동성에 찬성 및 동조행위를 하였고, 계교로써 채무자 소속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으며, 채무자 소속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범과로 채무자 소속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고발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23. 6. 7. 범과가 인정된다고 채권자를 권징재판에 기소하였다(이하 '제1차 권징기소'라고 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2023. 7. 27. '채무자 권징재판에 적용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7조 제2항1)에 따르면 심사위원과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에

1) 【1417】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는 같은 지방회에 속한 경우

속한 경우 심사위원이 제척되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채무자 권징재판위원회에 권징기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채무자 권징재판위원회는 2023. 8. 3. 심사위원회의 공소를 기각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이후 심사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는 심사위원 1인을 교체한 다음 2023. 9. 8. 채권자에게 2023. 9. 15. 예정된 심사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2023. 9. 13.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소환은 이미 공소기각결의로 종결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절차에 위배하여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에 불출석 하였으며, 재차 심사위원회에서 2023. 9. 19. 심문일을 지정하고 소환하였으나 불출석하였다. 심사위원회는 2023. 9. 19.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권자를 '채무자 교회 모함 및 악선전,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동성에 찬성 및 동조행위'로 권징기소하였고(이하 '제2차 권징기소'라고 한다), 채무자 권징재판위원회는 2023. 12. 8. 아래와 같은 범과사실로(이하 '이 사건 범과사실'이라 한다) 채권자를 출교에 처하는 판결(사건명 기감경일재 제2023-30, 이하 '이 사건 권징결의'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범과사실

1. 채권자는 2021. 3. 12.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겪기 시작한 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점 때문이에요. 횡령과 성범죄 등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 나왔죠. 교회는 반성은커녕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권력 집단은 적을 상정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해요.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어요.”라고 발언하고, 2021. 7. 22.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한국 교회의 소수자 혐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계교로써 채무자 소속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

2. 채권자는 2020. 12. 18.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여하여 집례하였고, 2021. 6. 27.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하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하였고, 2021. 10. 6. 한신대 채플시간에 설교자로 참석하여 설교 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현하였으며, 2022. 7. 16.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채권자가 대표로 있는 ‘큐앤에이’(Q&A)²⁾의 부스를 만들어 참가하여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함

마. 채무자에 적용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의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일반재판법]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②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 ② 제3조 제7항(이단종파에 찬동 등), 제8항(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은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정지를 의미한다.

2) 교회 내 성소수자 인권단체

-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
-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바. 채권자는 이 사건 권징결의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4. 3. 4. 채권자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총회2023총재일07)을 선고함과 동시에 이 사건 권징결의가 확정되었다³⁾.

사. 한편 채권자는 이 법원 2023가합103692호로 이 사건 권징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24. 6.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채무자가 2024. 7. 8.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권징재판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쟁송과 달리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이 사건 권징결의는 채권자에 대한 권징재판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권징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의 각하를 구한다.

살피건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

3) 교리와 장정 【1450】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①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관련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 참조).

이 사건 범과사실을 보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소속 이 사건 교회에서 누리는 지위, 즉 목사직을 가진 상황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 SNS에서 밝힌 의견, 퀴어축제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분쟁인데, 목사가 채무자 소속 교회의 구성원인 이상, 그러한 지위를 그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분쟁 또한 종교의 교리나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① 채무자 소속 교회 내부의 신도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사법권의 한계 밖에 있다고 보거나 소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법상 지위의 존부나 그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의결 및 처분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에서조차도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큰 점, ② 현실적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신도자격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 그와 관련하여 효력이 다투어지는 각종 처분이나 회의체의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수가 적지 아니할 터인데, 그저 종교단체 내부의 신도자격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에 관한 심리조차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교단체 내에서의 신도자격이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신도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 자체가 언제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④ '출

교(黜教, excommunication)'라 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하는 벌이고, 교인을 교적에서 삭제하고 교회에서 내어쫓는 최고의 형벌로서, '공동체에서의 추방' 곧 파문(破門)을 의미하는바, 특히 교회 내부의 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자제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고려를 바탕에 깔고 있는데, 채무자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전래된 것으로서, 감리교(Methodist Church) 자체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걸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신도 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출교처분이 비단 국내 감리교를 넘어서 전 세계 감리교 차원에서 채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무자 권징재판위원회를 경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채무자 내부에서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⑤ 채권자가 이 사건 채무자 권징재판위원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 1심에서 해당 재판부가 그 적법성을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무자 권징재판위원회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채무자 권징재판위원회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 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권징결의에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는지 본안소송에서 다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과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출교처분까지 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가처분단계에서 이 사건 권징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나아가 당사자의 태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1) 채권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1409] 제9조 제2항4)에서 고발한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과사실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고발대상 범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속 설진기 목사 등 고발인의 고발장을 근거로 기소에 이르렀으니 제1,2차 권징기소는 모두 절차상 위법·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권징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권징결의에서 '교리와 장정 [1409] 제9조 제2항이 고발권을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과사실은 감리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과이므로 고발인들이 교리와 장정 제9조 제1항의 피해자 지위에서 고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일반범과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가 2023. 10. 20. 의회 행정책임자의 범과 전반에 관한 직무상 고발권을 신설함과 동시에 특정 범과에 한하여 목사, 장로의 고발권을 신설함으로써 고발대상 범과와 고발권자를 제한한 이래 현재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고, 고발대상과 고발권자의 제한은 범과 위반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벌칙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나친 유추 또는 확장해석으로 가벌성을 확대해서는 아니 되며 그 문언에

4)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하기 전에 마태복음 18 : 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이단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 제9항(절취, 사기, 공갈, 배임,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 제13항(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 간음, 성폭력과 유사성행위),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때)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2조 제2항⁵⁾에서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종래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2014총특선01)에서도 교리와 장정 [1409] 제9조 제2항은 '고소·고발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사와 장로에게 특정한 범과에 한하여 고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고발대상 범과가 아닌 범과에 대한 고발은 부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권징결의의 위와 같은 해석은 교리와 장정 [1409] 제9조 제2항의 문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자, 사실상 모든 범과에 대하여 개별 교인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교리와 장정 [1409] 제9조 제2항의 범위를 징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범과 부분에 대한 고발인들의 고발은 교리와 장정 [1409]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고발대상 범과에 대한 고발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제1,2차 권징기소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의 여지가 있다. 이를 간과한 채 실체 판단을 한 이 사건 권징결의 또한 마찬가지이다(채권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채권자에 대한 권징기소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일반 범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그 징계수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1402】 제2조(재판의 대상자)

①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교인과 교역자를 포함한다.

②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과사실 중 먼저 '채무자 소속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한 범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개신교 일반의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그 행위에 출교를 할 만한 범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개신교 일반의 교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공표한 이유와 목적, 표현의 수위가 통상적인 비판 및 논쟁의 수위를 벗어난 것인지 등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과도,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⁶⁾,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차별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 참여 및 축도의 구체적 동기와 경위, 당시 채권자의 발언 내용 및 참석자들의 반응, 채권자의 평소 소수자를 위하여

6)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동성애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에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채권자의 가치관 및 채권자의 과거 교단 기여 정도, 세계 각국의 감리회교단 또는 국내 교단별 동성애에 대한 입장 및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더욱이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이 사건 목사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교인으로서의 지위까지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채무자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지위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헌법상 누리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 사건 범과사실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제5조7)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한 정직, 면직, 출교 처분 중 정직 또는 면직이 아닌 최고 징계인 출교를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과거 출교 처분 사례⁸⁾와 비교하더라도 채권자의 일반범과 행위에 대하여 최고 징계인 출교처분을 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3)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권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다더라도 사건의 성질상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7)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 제8항(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은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8) ▶[충청연회2022연일1] A목사에 대하여 ① 교회재산을 받기 전 교인간 법정소송, ② 교인에 대한 무고, ③ 면직선고를 받았음에도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교회재산을 유용하거나 예배당을 폐쇄하는 등 교회기능 및 질서문란, ④ 예배방해 및 당회방해 ⑤ 총 17회에 걸쳐 약 9,459만 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이유로 출교처분

▶[중부연회 중부재2022-1] B목사에 대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약 7년 동안 배우자 아닌 C와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C로 하여금 2회 낙태시술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출교처분

▶[총회 2019총재일06] D목사에 대하여 ① 교회공금 96억 원 횡령 및 공금유용, ② 교회매매, 사리사욕 추구 ③ 교회의 기능과 질서문란을 이유로 출교처분

▶[서울남 2023-03] E목사에 대하여 '간음' 범과로 출교처분

권징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 1심 판결 후 채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채권자와 채무자의 태도 및 사안의 쟁점 등에 비추어 본안소송 확정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교회에서 출교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등 감리교단 신도로서 어떠한 종교활동도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는 금전적 배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이 사건 권징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 기각부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는 이상, 권징결의가 무효가 된다면 권징결의는 확정되지 않아 집행력이 배제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출교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행한 출교처분 또한 무효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별도로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이 '직업정지처분'의 효력정지까지 구하는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까지는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7. 18.

재판장

판사

송중호

